

##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2호, 2022. 12.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외 무역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18885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의 기준을 '1억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 대통령령 제33042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같다)"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7조의2의 제목 "(서류검사)"를 "(자료조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서류"를 각각 "자료"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억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본문 중 "수출입 규모"를 "수출입 규모, 중소기업 여부"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로,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출 물품의 가격·수량"을 "가격·수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협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로 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출 물품 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에서 정한 기준
2.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기준
3. 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

제90조 중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로 한다.

제91조제6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권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